

##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

-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종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대상 -
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5월 13일(수)부터 6월 22일(월)까지 「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종증 발달 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,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.

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·벽지 거주,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며,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종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.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2026년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.

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관련 의견은 6월 22일(월)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.

## < 의견 제출방법 >

### ○ 제출처(문의)

- 주소 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&G 세종타워 13층,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- \* 전자우편 : leemy64@korea.kr
- 전화 : (044) 202-3344, 3345, 팩스 : (044) 202-3963

### ○ 기재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

<붙임>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

<별첨>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이고운 (044-202-3340)
		담당자	주무관	이민영 (044-202-3345)



**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**

- (근거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의거, 2011년부터 시행
- (목적)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
- (지원대상) 6~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(지원규모) 활동지원급여(활동지원등급별 산정) + 특별지원급여(생활환경 고려)
  - \* 최소 약 60시간(1,040천 원) ~ 최대 약 480시간(8,293천 원)
  - \* 활동지원등급 : 기능상태, 사회활동,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구분

**<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>**

구분		급여량				
활동 지원 급여	급여	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
		8,293천 원 (약 480시간)	7,774천 원 (약 450시간)	7,257천 원 (약 420시간)	6,739천 원 (약 390시간)	6,221천 원 (약 360시간)
		6구간	7구간	8구간	9구간	10구간
		5,703천 원 (약 330시간)	5,181천 원 (약 300시간)	4,665천 원 (약 270시간)	4,148천 원 (약 240시간)	3,629천 원 (약 210시간)
		11구간	12구간	13구간	14구간	15구간
	3,112천 원 (약 180시간)	2,593천 원 (약 150시간)	2,076천 원 (약 120시간)	1,558천 원 (약 90시간)	1,040천 원 (약 60시간)	
본인 부담	-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) : 면제 - 차상위계층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: 2만 원(정액) - 차상위 초과 :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(41,600원 ~ 216,200원)					

- (급여종류) 활동보조(신체·가사활동·이동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  - (활동지원기관)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, 수급자 수,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
  - (활동지원인력) 활동보조는 교육(50시간)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,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,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
- (시간당 단가) 활동보조 17,270원/시간('26년 기준)